

## 大學教育의 位相과 定員政策

李 宗 宰\*

(本 協議會 政策研究部長)

### 1

대학 정원 정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성격을 갖는다. 대학 정원 정책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발전하여 온 과정에서 정원 정책의 필요가 제기되었고, 대학 정원 정책은 대학교육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바도 있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제약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대학 정원 정책은 고등교육 발전과의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 2

지난 35년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문교 정책의 발전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정부 수립 이후 5.16 혁명 전까지의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조성한 자유 방임의 시기, ② 5.16 이후부터 1970년대초까지의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한 시기, ③ 1970년대초 이후의 대학에 대한 계획적인 통제와 실험적 지원 육성 시기, 그리고 ④ 1980년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와 제도적 통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방임기에 빚어졌던 대학의 난립, 부실한 대학교육 내용, 무절제한 교육 투자와 이에 편승하는 사학의 영리 추구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망국론을 낳게 한 부조리 등의 이유로 대학에 대한 통제 감독의 강화가 불가피하게 보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소위 대학의 정원 정책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학 정원 정책은 각 대학별 전공 학과별 입학 정원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결정하여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policy instrument)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 통제의 대학 정원 정책은 입학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무분별한 교육 투자를 억제하여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받은 고급 인력의 실업 혹은 준실업 상태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크게 고려되었음도 사실이다.

### 3

대학 정원 정책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 서울大 教育學科 教授로서 本 協議會에 파견 근무중임.

있는가? 현행 대학 정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에는 기본 법령으로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이 있고, 기본 법령을 구체화시킨 대학 학생 정원령과 각급 학교 설치 기준령(대학 설치 기준령,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등이 있다. 이러한 근거 법령은 정원 통제의 기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학 및 사범대학 정원 정책에 관한 법령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대학, 방통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등의 여타 고등교육기관 정원 정책에 관한 법령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교육법 제10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학생 정원 변경을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다. 대학 및 사범대학을 제외한 여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학칙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59조, 각급 학교 설치 기준령) 학생 정원 변경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된다(교육대학의 학급당 학생 수 및 전문대학의 학과당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법 시행령 제143조, 제159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물론 대학의 학칙에 학생 정원을 기재할 수 있으나 이를 학칙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칙이 무효가 되거나 학생 모집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학 정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법의 기본 골격에 따라 대학, 사범대학 학생 정원 정책과 여타 고등교육기관 학생 정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나누어 살펴 본다.

● 대학·사범대학 정원 정책의 법적 근거

대학·사범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법 제109조의 2). 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도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생 정원은 각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학생 정원이 학칙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학과 사범대학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대학 학생 정원령'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65조 3). 따라서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정원 정책과는 달리 대학과 사범대학의 정원 정책에는 정부 각 부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대학 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2392호, 1988. 2.1)은 본문 총 4조와 부칙, 그리고 개별 대학의 계열별 및 학과별 입학 정원을 명기한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입학 정원과 입학 정원 이외의 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한 학생 정원에 관한 규정(동령 제2조),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의 변경에 관한 규정(동령 제3조), 학생 명단의 보고에 관한 규정(동령 제4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본문은 졸업정원제 폐지로 인하여 1988년 2월 대폭 수정되었으나, 경과 조치를 두어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 및 사범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의학, 치의학, 한의학과는 1992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 정원의 운영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였다(동령 부칙 제2항). 부칙은 매년 변경되어 제적 학생의 재입학 등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등의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는 해당 연도의 개별 대학 계열별 또는 학과별 입학 정원이 명기되어 있다(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경우에는 졸업 정원을 명기하였다).

대학의 학과 증설 또는 학생 정원의 증가의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가분에 관하여 편제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대학 설치 기준령 제2조 제1항의 시설·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 여건과 학생 정원을 연결짓고 있다(대학 설치 기준령 제2조 제2항).

대학원 학생 정원은 대학 학생 정원령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대학원 규정 제6조)고만 되어 있고 다른 근거 규정은 없다.

●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학, 개방대학, 각종 학교의 정원 정책의 법적 근거

교육대학 이하 각종 대학의 학생 정원은 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59조에 학칙 기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칙 변경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므로(동 시행령 제55

조 제 2항, 제59조 제 2항) 학칙 기재 사항의 하나인 학생 정원의 변경도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문교부가 교육 기관의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관련된 제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교육대학의 학생 수는 학급당 40인 이하로 하고 있다(등 시행령 제143조). 전문대학의 학과당 학생 정원의 기준은 40인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생 수를 증감할 수 있다(등 시행령 제160조). 대학·사범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과 각종 학교의 학생 정원 증가분도 교육 여건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대학 설치 규정령 제 2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각종 학교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 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도 동 조항이 준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의 기준에 따라 교지·실습지 등 시설 용지의 전부와 교사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고, 그 편제 완성 연도까지 시설 전부를 완비할 수 있는 재원 또는 경비(국·공립에 있어서는 예산)와 초년도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전문대학 설치 기준령 제11조)고 규정하여 교육 여건과 학생 정원을 연결짓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대학의 학과별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제 5조), 개방대학의 경우는 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방대학 설치 운영 규정 제16조 제 1항).

#### 4

대학 정원 정책을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관련 시켜서 보려고 할 때, 먼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어떠한 관점(perspectives)에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 심의회의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과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 해당하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규정하고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秀越性의 추구(excellence), ② 自律性의 신장(autonomy), ③ 多樣性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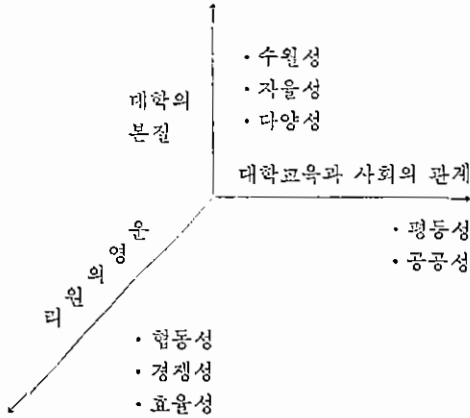
장(diversity), 그리고 ④ 效率性의 제고(efficiency)이다. 이러한 네 가지 방향이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으로 타당하며 또 충분한 것인지의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소론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시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다만 대학 정원 정책의 성격과 의미를 검토하기 위하여 敎改審의 네 가지 방향에 네 개의 방향을 추가하여 대학 정원 정책이 고등교육에 주는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4개의 방향으로 ① 平等性의 추구(equality), ② 社會的 公共性의 충족(social responsibility), ③ 協同性(cooperation)과 ④ 競爭性(competition)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8개의 관점(perspectives)은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과 발전의 방향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규정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과 그 이론적인 개념 구조가 검토되어 관련된 교육 제도와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물 수립할 수 있도록 이 관점의 구조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개발을 시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망적 관점에 따라 정책의 구조화와 논리의 체계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생각된다.

이 8개에 이르는 방향은 서로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정원 정책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틀'도 달리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8개의 방향을 세 개의 축(dimensions)으로 구분해서 보아도 몇 가지 유용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축을 ① 대학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방향, ② 대학과 사회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방향, 그리고 ③ 하나의 교육 체제(system)로서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요청되는 운영 원리로서의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해 볼 때, 먼저 대학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방향으로 ① 수월성의 추구, ② 자율성의 신장,

③ 다양성의 조장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수월성과 자율성이 대학의 본질적 특성이 된다는 데에는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 대두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속성으로서 대학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속성으로 볼 수도 있고, 대학과 사회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방향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① 교육 기회의 균등성(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으로서의 평등성의 추구, ②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로 대학교육도 하나의 교육 체제로 보아서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요청되는 원리로서 ① 협동성, ② 경쟁성, ③ 효율성을 선정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시적으로 이 세 축의 관계를 다음 <표 1>과 같이 표현해 보고자 한다.

<표 1> 대학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3조망적 방향의 축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을 제검토할 때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의 일정 수준을 지키기 위하여 대학의 본질을 반영하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이 그 가야 할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원 정책과 대학 입시 제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개혁 심의회의 고등교육 개혁안이 제안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개심의 고등교육 개혁안은 수월성의 추구, 자율성의 신장, 다양성의 조장, 효율성의 제고라는 방향에서 구안되었다. 대학의 정원 정책에 대한 교개심의 정책 제안도 이러한 4개의 방향이 요구하는 맥락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4개의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이 어떠한 정책 전담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인가도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4개의 방향을 대학 정원 정책과 관련시켜 볼 때 각각의 정책 방향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수월성의 추구를 '각 개인의 잠재적인 자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개인간 및 교육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조성하는 여건 및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은 ① 고등교육의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면서 고등교육 인구를 적정화하고,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질적인 평가와 학위 수여 요건을 강화하고, ② 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실적과 노력에 대응하여 선별적 육성과 차등 지원의 원칙을 적용하고, ③ 대학의 입시 제도와 교육과정을 학생의 적성과 노력을 최대한 신장·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④ 연구 활동과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수월성의 측면은 대학의 정원 정책에 적정 수준의 규모와 교육 여건의 충족이라는 제한을 설정하고 선별적·차등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의 측면에 대해서 '스스로 다스리는 통제 그 의미를 파악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감독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되 행위의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

율성의 개념에 터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국립대학에 자치 운영 기구를 설치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통제도 '평가 인정 체제와 협의의 기구'의 육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율적 통제 장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양성은 고등교육 기능의 기능 분화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리하여 다양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① 고등교육의 체제를 다양화하고 기능 분화를 조성하며, ②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수학 연한, 입학 조건 등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③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안에 대학도 교육 기능상에 강조점을 달리 하는 발전 모형을 정립하도록 하고 대학마다 특성 있는 학문 성향과 교풍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교개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에 고등교육 체제의 외적 생산성과 내적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적 생산성에는 교육의 책무성과 사회적 적합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념상의 모호함 속에서의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는, ① 대학교육의 직업교육성과 산학 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②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정원 정책은 수월성의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 고등교육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정원 정책은 일단 대학 체제의 자율성에 제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학 정원 정책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다양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의 정원 정책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대로 교육의 책무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선도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공공성의 수준 유지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 정원 정책의 개선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자율화의 방향에서 정원 정책을 자율화하고, 정원 규모를 적정화하며, 정원의 배분을 합리화하는 방향에서의 단계별 개선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원 정책의 자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 인구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 정원 규모는 당분간 정부가 책정되되,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계열별·학과별 정원 책정은 단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향에서 자율화 추진을 위하여 단계적 접근 모형을 구상하고 있다. ①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정착화될 때까지는 정부가 대학별 전체 정원 또는 계열별·전공 영역별 정원 규모를 책정하고, ② 대학 평가 인정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대학 평가 기능을 가지는 대학간 자율 협의의 기구에서 정기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대학의 계열 및 전공 영역별 정원을 책정하며, ③ 대학의 자치·자율 능력이 확보되고 제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정원 책정은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향후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와 고급 인력 수요의 증대에 부응하여 전체 고등교육 정원은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성격, 그리고 여건 확보 정도에 따라 정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방향에서 ① 전문대학은 증진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중심의 전문대학과 직업과정 및 인문·교양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종합형 전문대학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정원 규모를 확대한다. ②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교육 과정만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정예화된 증진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규모를 조정하고, 인문·교양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전문대학은 다양한 고등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③ 4년제 대학의 전체 정원 규모는 당분간(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고등학교 졸업자의 증감과 고등교육의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④ 4년제 대학은 대학원과 연계 속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 대학원 병설 대학, 학부 중심 대학으로 성격과 유형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학부 학생 정원과 대학원생 정원의 규모를 조정한다. 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전공 영역별 석·박사급 인력 수요에 맞게 정원 규모를 조정하고, 재교육 기능을 가지는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한다. ⑥ 대학원의 학생 정원은 계열별 총 정원만 책정하고, 구체적인 학과 정원은 정부가 제시한 인력 수급 측면에서의 배분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한다. 대학 정원의 적정 규모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어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얼마의 규모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개심의 정원 규모의 적정화 논리는 지금까지의 정원 정책의 흐름과 그 연장선 위에서 외적인 '타당한 결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통제 논리 이외에 자율화의 방향에서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정원 배분의 합리화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원 배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고등교육의 수요를 다양한 체제에 분산·수용하고 고등교육 단계의 지속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원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계열별·지역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 방향에서 ① 전문대학의 성격과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4년제 대학 편중의 고등교육 수요를 전문대학으로 흡수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정원을 확대한다. ②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인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을 확충하여, 제1차적(고교 졸업과 동시적) 고등교육 기회를 상실한 수요자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들 대학의 정원을 확대한다. ③ 4년제 대학의 경우, 향후의 과학 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대자

연계열의 정원을 4:6의 비율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일반대학원의 경우, 연구 인력과 교수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책정하되 과학 기술 분야의 정원을 중점적으로 증원하며, 대학원에 영세한 규모의 모든 학과를 개설하기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학과당 학생 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⑤ 고등교육기관의 신설이나 서울 소재 대학의 분교 설립을 서울에서 벗어난 중·소도시 이하 지역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증원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외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인가한다. ⑥ 개별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7

교개심의 정원 정책 개선 방안은 일견,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대학교육의 자율화 방향에서 대학 정원 정책이 합리적으로 전개되리라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책 방향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정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교개심의 개선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자율화를 지향하되,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정부가 정원 책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지 정원의 규모를 지금까지 학과 단위까지 해오던 것에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대학별 전체 정원 혹은 계열별·전공 영역별 정원 규모만을 정부가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원 책정의 자율화 단계에 가기 이전의 중간 단계에서는 대학 평가 인정 제도나 대학간 자율 협의 기구를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적 결정을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전문적 판단, 그리고 자율적 협의로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학 평가 인정 제도의 방향과 그 전망이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대학의 정원은 전공 계열까지는 정부가 계속 관장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 될 것이다.

둘째로 정원 책정의 자율화의 방향과 정원 규모의 적정화와 배분의 합리화 방향에 내포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수월성, 다양성, 대학교육의 기회 균등(평등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의 정립과 방법론이 모호하다. 교개심의 방안은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적정화와 합리화가 의미하고 있는 수월성, 다양성, 평등성,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에 기초하여 큰 테두리와 윤곽을 결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간의 관계에서 자율의 폭은 부분적으로 확대하되, 외적 통제를 통하여 자율성과 공공성 안에 조화를 찾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이 기대하는 바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율성도 충분히 신장되지 않으면서 공공성도 지켜

지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 8

대학교육의 자율화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교개심의 정원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논리를 탐색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원 정책을 포함하여 대학교육을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론은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율화의 전제 위에서 경쟁과 협동의 원칙과 계획적인 지원과 조성이 중심이 되는 대학교육 정책은 자율화의 방향에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학 정원 정책의 골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